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57

발의연월일: 2021. 4. 30.

발 의 자: 박상혁 · 이정문 · 임호선

김정호 • 윤후덕 • 양향자

허 영·신동근·최인호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큼에 따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마약사범의 재범률보다 높은 44%에 달하여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 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 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 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 런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93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 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 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4조의2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제3호의2,"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 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 전한 경우

제13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제44조의2에 따른 음주운 전방지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 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아 감독하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저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점검 또
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세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 나. (생 략) <신 설>

4. ~ 8. (생략)

③ (생 략)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이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44조의2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u>경우</u>
4.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
<u>제3호, 제3호의2,</u>

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 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 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 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20. (생략)

② ~ ④ (생 략)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생 제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1. 5. (2354 年日)
3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
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에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현
행과 같음)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
<u> </u>
소득층에게 제44조의2에 따른

<u>②</u> (생 략) 제148조(벌칙) (생 략)

<신 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48조(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 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